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신청요강

▶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202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5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접수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외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8.(목) 18:00:00	2025. 4. 24.(목) 14:00:00 ~ 2025. 5. 9.(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12.(월) 18:00:00	2025. 4. 24.(목) 14:00:00 ~ 2025. 5. 13.(화) 18:00:00
신청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중견연구(창의연구형)) 2025. 5. 8. 18:00:00 /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외 2025. 5. 9. 18:00:00)까지 계획서 등록(업로드)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

※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접수 미완료 시 별도 구제 없음.

②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R&D 신문고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과제신청 시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연구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검토 시 탈락될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신청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사업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모두 조치하였고, 미비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가입·이용방법에 관한 질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콜센터 1877-2041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접수시작 시간이 접수시작일 14:00:00부터임을 알고 있다.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18:00:00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00:00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함을 알고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 집단연구사업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업의 평가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였다.	
사업 신청 시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 것(accepted; in press 포함)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직접비, 간접비 분리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자는 과제 신청 시 직접비만 신청하는 것임을 숙지하였다. * 간접비는 선정 이후 재단이 산정하여 별도 지급	
온라인 신청안내 매뉴얼이 신청 접수 전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버튼 클릭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을 알고 있다.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제한을 준수하였고, 작성분량 초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하는 사업의 연도별 직접비 신청금액과 금액단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다.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에 제대로 지원하였다.	
업로드 한 연구계획서 파일에 대한 확인(최종본, 암호해제, 오류확인)을 하였다. *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은 2GB(각 첨부파일별 용량은 500MB)를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목 차

I. 2025년 사업개요

1. 사업목적	1
2. 지원내용	1
3. 공고 및 신청·선정 과제 수	2
4. 2025년 추진일정	2
5. 2025년 주요 추진내용	3

II.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규모	10
2. 신청 및 수행 제한	10
3. 신청절차 및 방법	12
4.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14
5. 감점제도 운영	17
6.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안내	18
7. 공통 유의사항	22

III.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절차 및 방법	24
2. 평가항목 및 내용	25
3. 차별성 검토	26

I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27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28

V.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30
2.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30
3. 성과관리	31

VI. 기타 사항

붙임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41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59
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64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68

I 2025년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2 지원내용

※ 간접비 분리지급 시행에 따라 **연구비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간접비는 선정 이후 재단이 산정하여 별도 지급**, 자세한 내용은 [IV-1. 연구비 지급] 참조

사 업		세부 내용		
우수 연구	중견 연구	창의연구형	지원대상	■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비	■ 최대 연간 직접비 0.5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 1~3년
	신진 연구	우수신진 연구 (씨앗연구)	지원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8.1.1.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85.1.1. 이후 출생)인,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0.1.1. 이후 임용)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비	■ 최대 연간 직접비 0.8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 1년
	개척연구		지원대상	■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비	■ 최대 연간 직접비 0.8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 1~3년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지원대상	■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비	■ 최대 연간 직접비 1.6억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기간	■ 1~3년	

*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단,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활약서를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신청자격을 인정하며,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 18시까지 주관연구기관이 공문 송부)

**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0.1.1. 이후 임용)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단,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활약서를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신청자격을 인정하며,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 18시까지 주관연구기관이 공문 송부)

****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과제 신청 서식에 첨부된 '2025년 국가아젠다 목록'의 아젠다를 주제로 신청 필수

3 신청 및 선정 과제 수

- (신청) 개인연구는 연구책임자로 아래의 원칙에 따라 신청가능
 - (개인연구, 2차 신청) 개인연구(중견연구(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중 1과제
 - ※ 당해연도 교육부 학술연구혁신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신청자는 개인연구 2차(중견연구(창의연구형), 신진연구(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신청 불가
 - ※ 단, 개척연구에 한하여 '25.6.1. 개시 사업 신청자 신청 가능

• 동시 신청제한 적용 대상 사업 범위

구 분		세부 사업	
교육부 소관	'25.6.1. 개시	학문후속세대지원	Post-Doc. 성장형 연구지원
	'25.9.1. 개시	학술연구혁신지원	보호연구, 미래도전연구지원, 글로벌R&D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 Post-Doc. 성장형 연구지원

- ※ 개인연구 1차 공모 과제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개인연구 신규과제 추가 신청 불가 (개척연구 제외)

○ (선정)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는 연구책임자로 1개만 선정

- ※ 그 외 기초연구사업 신청 및 수행 기준, 적용 예외 기준은 [II-2. 신청 및 수행 제한] 참조

<개인연구 신청·선정 과제 수>

구분	사업명		공고시기	신청과제 수	선정과제수	연구 개시일
개인 연구	중견연구	창의연구형	3.31.	1개만 신청 가능	1개	9.1.
	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4 2025년 추진일정

□ 중견연구(창의연구형)

구 분	내 용
3월 31일(월)	2025년도 신규과제 공모
4월 24일(목) ~ 5월 8일(목)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연구자 접수마감일)
4월 24일(목) ~ 5월 12일(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5월 ~ 8월	선정평가
9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5. 9. 1.)

□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구 분	내 용
3월 31일(월)	2025년도 신규과제 공모
4월 24일(목) ~ 5월 9일(금)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연구자 접수마감일)
4월 24일(목) ~ 5월 13일(화)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5월 ~ 8월	선정평가
9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25. 9. 1.)

※ 상기 모든 사업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2025년 주요 추진내용

1 지식의 탐색 → 축적 → 확장의 지식 창출 파이프라인 구축

□ 폭넓은 연구자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식의 탐색 → 축적 → 확장의 기초연구 본연적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창의 연구) 학문 다양성 기반의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중견 연구)’의 신규과제를 대폭 확대, 연구자의 자율적 연구 지원

※ 창의 연구 신규과제 : '24년 140개 → '25년 885개

- (지원대상)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지원규모) '25년 619억원/796~885개, 연구기간 1~3년
- (지원내용) 다양한 분야 우수한 연구자의 필요 최소 규모를 충족하는 소규모 연구 지원

- (도약 연구)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간소화된 평가를 통해 ‘도약(후속) 연구’ 지원



<지식창출의 파이프라인 연계>

2 유망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 등을 바탕으로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

○ (씨앗 연구) 신입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 확보를 통해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 신진 연구 內 ‘씨앗 연구’ 신설

- (지원대상)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 ※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 (지원규모) '25년 400억원/360~400개, 총 연구기간 1년
- (지원내용)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및 수월성 배양을 위한 창의적 연구 지원

○ (체계적 지원) ‘씨앗 연구’ 신설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씨앗→우수)하는 한편, 신진연구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환경 조성 지원

- 우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장기·안정적 지원(‘한우물파기’)도 강화

※ 신진연구자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 '25년 300억원(100개 과제)



<젊은 연구자 지원 체계화>

3 기초연구 지원의 혁신성·전략성 제고

□ 혁신·도전적 연구 풍토 조성과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기초연구 추진 등을 위해 신규 기초연구지원 사업 도입

○ (개척 연구) 최초의 질문을 통한 新 학문 분야 개척을 위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 등을 지원하는 ‘개척연구*’ 신설

* 1인 1과제 예외, 중간점검 폐지, 실패 용인 등 제도적 뒷받침 병행

- (지원대상)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
- (지원규모) '25년 150억원/135~150개, 연구기간 1~3년
- (지원내용) 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개념 발견 및 정립 등 개척형 연구 수행 지원
- ★ (Key point) 연구자의 도전 의식 고취를 위해 기초연구사업의 '1인 1과제 원칙' 예외를 적용하고, 단계평가 삭제, 후속 연구 연계 강화 등 혁신적 평가·관리 방식 도입

○ (국가아젠다연구) 정부가 정책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안에서 연구자가 자유로운 제안을 통해 연구를 수행

* 예시 : 12대 국가전략기술, 미래 유망기술 분야 등

- (지원대상)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
- (지원규모) '25년 400억원/180~200개, 연구기간 1~3년
- (지원방식) 정책분야는 정부가 지정(Top-down)하고 분야안에서 연구계획(연구방법, 수행방식 등)은 연구자가 제안(Bottom-up)하는 미들업(Middle-up) 방식의 사업 추진
- ★ (Key point) PM 중심의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국책 간 연계를 위한 한국연구재단 내 조직적 지원 및 활용·연계 방안 강구 등 병행

4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고도화 및 연구 혁신 견인

□ 블록펀딩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연구소 육성

○ (국가연구소) 블록펀딩을 통한 패키지 지원(연구·인력·시설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대학연구소 육성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도입

□ 사업 추진체계 고도화를 통한 집단연구 지원의 질적 성과 제고

○ (사업구조 개편) 기초연구실 유형 중 융합형을 심화형으로 통합하여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업의 정체성 강화

* 기존 심화형/개척형/융합형 구조를 심화형/개척형으로 개편

○ (연구비 현실화) 타 유형 대비 정체되어 있던 SRC*, MRC** 연구개발비를 현실화하여 연구 환경 개선 및 연구의지 고취

* SRC (기준)연 15.6억원 이내 → (개선)연 16.5억원 이내

** MRC (기준)연 14억원 이내 → (개선)연 15억원 이내

- **(신진연구인력 자격 완화)** 연구자 생애주기 고려 및 개인기초연구사업과의 자격 기준 통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연구자의 혼란을 해소
 - ※ 기존 기준(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연구자)에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연구자' 추가
- **(국제공동연구 확대)** 선도연구센터 공동연구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해외 우수 연구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촉진
 - * 선도연구센터 공동연구원 자격 요건 : (기존)국내 공공·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 (개선)국내외 공공·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정규직) 이상
- **(컨설팅 내실화)**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한 전담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집단연구 컨설팅의 실효성 제고
 - ※ ERC (기존)과기분야 3인 → (개선)과기분야 2인, 성과활용전문가 1인
 - ※ RLRC (기존)과기분야 3인, 지역 추천 1인 → (개선)과기분야 2인, 성과활용 1인, 지역 추천 1인
 - ※ IRC 과기분야 2~3인, 과기정책, 대학교육, 성과활용 2~3인으로 구성

< 2025년 기초연구사업 개편(안) >

2024년				2025년(안)				
사업명		연간연구비	연구기간	사업명		연간연구비	연구기간	
우수 연구	글로벌 리더연구		최대 8억	9년(3+3+3)	글로벌 리더연구		최대 8억 9년(3+3+3)	
	중견 연구	유형2(글로벌형)	최대 4억	1~3년 4년(3+1) 5년(3+2)	유형2(글로벌형)		최대 4억	1~3년 4년(3+1) 5년(3+2)
		유형1	최대 3억		유형1		최대 3억	
		창의연구형		최대 0.7억	1~3년	창의연구형		최대 0.7억 1~3년
	-		-	-	도약형		(유형2) 최대 4억 (유형1) 최대 2.5억	3년
	한우물파기		최대 2억	10년(5+5)	한우물파기		최대 2억 10년(5+5)	
	우수신진		최대 3억	1~3년 4년(3+1) 5년(3+2)	우수신진		최대 3억 1~3년 4년(3+1) 5년(3+2)	
	-		-	-	우수신진(씨앗연구)		최대 1억	1년
	신진 연구	세종과학 펠로우십	국내	1.3억	5년(3+2)	세종과학 펠로우십		국내 최대 1.3억 5년(3+2)
			국외	0.7억	1년	세종과학 펠로우십		국외 0.7억 1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최대 5억	1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최대 5억 1년
	글로벌 매칭형		최대 2억	3년	글로벌 매칭형		최대 2억 최대 3년	
	-		-	-	개척연구		최대 1억 1~3년	
	-		-	-	국가아젠다기초연구		최대 2억 1~3년	
	생애 기본	기본연구		0.5~0.8억	1~3년	기본연구		0.5~0.8억 1~3년
생애첫연구		0.3억	1~3년	생애첫연구		0.3억 1~3년		
집단 연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14억~50억	7~10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15억~50억 7~10년	
	-		-	-	국가연구소(NRL2.0)		100억 (교육부 예산 포함) 10년	
	글로벌 기초연구실		최대 5억	1~3년	글로벌 기초연구실		최대 5억 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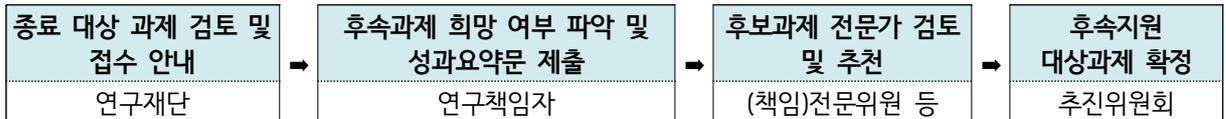
* 표시는 글로벌 R&D로 추진(중견 유형1, 우수 신진은 일부만 해당), 표시는 신규사업
 신규과제 대폭 확대

5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기초연구사업 특성 및 규모에 따른 최적화된 평가방식 도입·운영

○ **(평가 간소화)** 소형 과제, 후속 과제(도약) 및 아이디어 기반 과제(개척) 등에 대해서 간소화된 평가방식 도입

- **(도약 연구) 전문가(성과검토위원)를 중심으로 제출된 성과물에 대한 연구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등을 검토 → PM이 후속 연구 대상 후보과제 추천**



※ 성과물을 중점적으로 상대적인 점검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접수는 미 실시

○ **(평가 고도화)** 대형 과제(리더 연구, 국가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평가자·피평가자 쌍방향 토론) 도입 및 분야 최고 수준 평가자 활용 등 추진

□ 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성·전문성 강화

○ **(메타평가 실시)** 기초연구사업 평가 쉼 과정(평가계획 수립 ~ 이의신청 검토)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평가요소별 지표에 따라 단계별로 점검·검토하고 적절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

○ **(분석시스템 활용)** '25년 리더연구, 중견연구(유형2), 선도연구센터 등 대형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자 연구활동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 질적 향상 유도

* 연구자 연구활동 분석 정보: 논문 연간 피인용 수 추이, 학술지 논문수 추이, 연구과제 수행 정보, 특허등록 실적 등 다년간의 연구 실적 분석 데이터의 시각화 자료

※ 분야 특성에 따라 활용 여부는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개인연구 R&D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환경 개선

구 분	당 초(2024)	변 경(2025)
개인연구 연구형태 개선	▶(리더/중견/우수신진)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 중 연구형태 택1(후속 포함) ▶(한우물/세종(국내·외)) 단독연구	▶단독연구로만 운영(공동연구 폐지) ※ 공동연구원의 대표 실적을 다수 과제에 동시 활용 등 문제 개선
중견연구 사업유형별 공모 이원화	▶(상반기(1차)) 중견연구 유형1, 유형2 ▶(하반기(2차)) 중견연구 유형1, 창의연구형	▶(상반기(1차)) 중견연구 유형1, 유형2 ▶(하반기(2차)) 창의연구형 ※ 동일유형 신청제한 등 연구자 혼란 최소화 및 사업지원 효율화
세종(국내) 인건비 계상률 규정 완화	▶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 최소 50% 참여 필수(지급 인건비 기준)	▶연구책임자 연평균 인건비계상률 최소 50% 참여 필수(지급 인건비 기준) ※ 협약 유예 등으로 인한 월별 인건비 계상률 미충족 문제 개선
과제중단의 정당한 사유 기준 완화	▶퇴직 -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퇴직 - 재임용 탈락 및 소속기관의 귀책사유(폐교, 파산 등)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 소속기관의 문제로 인한 개선

6 학문분야별 연구수요 및 기초연구 정책방향을 고려한 신규 예산 배분

- (예산배분 기준) 학문 분야별 연구수요, 분야별 특성 및 이질적인 분야 간 경쟁이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예산 배분
- (중견·신진) 예산의 90%는 과제 신청에 따른 분야별로 수요 배분, 10%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자연과학 및 생명과학)에 우대 배분
 - ※ 중장기적으로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로 점진적·보완적 도입 검토

<< 예산배분 기준 >>

수요배분(90%)	정책배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신규접수 후 분야별 신청 총 연구비 비율 비례 배분 ○ 수요배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학문단이 40% 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률 조정, 기초연구 정책방향 반영 ○ 배분 기준 : 기초과학(자연과학, 생명과학) 우대(10%) ○ 정책배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CRB 분야의 선정률이 평균 선정률의 $\pm 50\%$를 넘지 않도록 조정

II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규모

사업구분		과제 수	과제당 지원규모 (직접비 기준, 간접비 별도)
중견연구	창의연구형	796 ~ 885개 내외	연 0.56억 원 이내 X 최대 3년
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360 ~ 400개 내외	연 0.8억 원 이내 X 1년
	개척연구	135 ~ 150개 내외	연 0.8억 원 이내 X 최대 3년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180 ~ 200개 내외	연 1.6억 원 이내 X 최대 3년

※ 지원규모는 신청 규모,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 및 수행 제한

※ 연구책임자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사전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중견연구(창의연구형) 2025. 5. 7.(수) /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외 2025. 5. 8.(목))까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공통사항)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우수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지원, 학술연구혁신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 2차 공모 사업인 개척연구는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예외

예외 사항

-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5.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글로벌 매칭형, 개척연구는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 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집단연구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기존 최소참여율 적용은 2022년부터 폐지(계속과제 포함)

□ 2025년도 2차 사업 신규 선정자의 신청 제한

○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연구책임자로 1개만 선정

구 분		세부 사업		선정 과제수
개인연구	과기정통부 소관	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유형2(글로벌형), 유형1, 창의연구형,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포함),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국외연수)), 국가아젠다기초연구		1개 (연구책임자)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혁신지원	보호연구, 미래도전연구지원, 글로벌R&D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 Post-Doc. 성장형 연구지원	
집단연구	과기정통부 소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1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교육부 소관	대학중점연구소지원(램프(LAMP) 포함)		
개인연구 (시설장비)	과기정통부 소관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1개

※ 개척연구는 1인 1과제 예외로 선정 과제수에 미포함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개인연구 및 집단연구와 중복 선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5년~과제 종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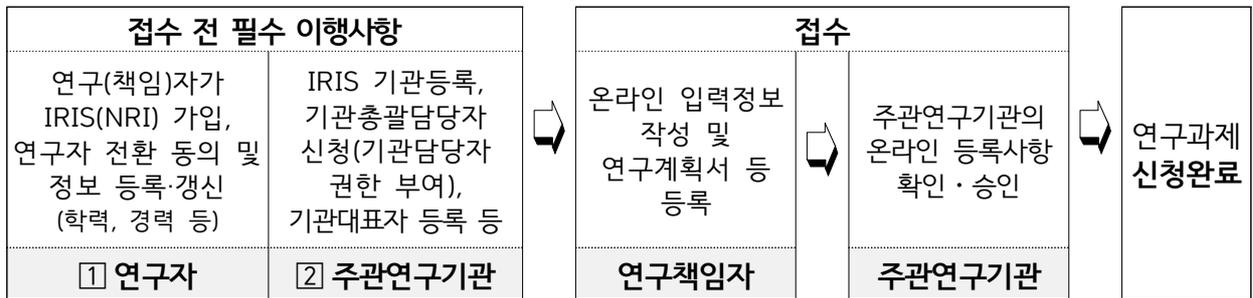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3 신청절차 및 방법

▶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과제신청 시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4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중견연구(창의연구형) 2025. 5. 8.(목) /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외 2025. 5. 9.(금)) 18:00:00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중견연구(창의연구형) 2025. 5. 12.(월) /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외 2025. 5. 13.(화)) 18:00:00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제출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 세부 사업별로 제시된 연구계획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암맹평가 미실시

-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 ▶ 반드시 제공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 제출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
-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관련 사항(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반영 기준 포함)] ※ 개인기초연구 전 사업 공통

- ▶ 최근 5년 이내(2020.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단, 성별에 관계 없이 연구자 본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2020. 1. 1. 이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2020. 1. 1. 전으로 반영하여* 실적 작성 가능

※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 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빙서류 첨부 필수이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 실시

* 예시: 2020.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2020. 1. 1. 이후가 아닌 2019. 1. 1. 이후 실적부터 제출 가능

※ 세부 사항은 FAQ 및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 내 설명내용 참조

□ **중견연구(창의연구형)**

○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8.(목)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12.(월) 18:00:00

○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 5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 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0. 1. 1.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9.(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13.(화) 18:00:00

○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 10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 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0. 1. 1.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 개척연구

○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9.(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13.(화) 18:00:00

○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 10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 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0. 1. 1.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9.(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5. 4. 24.(목) 14:00:00 ~ 2025. 5. 13.(화) 18:00:00

○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자녀수당 및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 인건비, 전문연구요원 확인서식 등)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 10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025년도 국가아젠다 목록의 아젠다를 주제로 신청 필수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20. 1. 1.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5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 온라인 입력 매뉴얼은 접수 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분류-각 사업별 사업공지 게시판에 별도 공지 예정

5 감점제도 운영

□ 감점

- 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점수 감점 부여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호

6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안내(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예)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3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총 정부출연금 15억원) 연구 수행기간 동안 청년 3명 의무 채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총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계획 제출

[적용 예시]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7억원	8억원	15억원
채용 의무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		

-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적용 예시]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대학)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5억원	5억원	10억원
채용 의무	1명	(해당없음)	1명

- 기업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적용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위탁연구개발기관(기업)	합계
정부지원금 총액	10억원	5억원	15억원
채용 의무	(해당없음)	1명	1명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정규직)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 (신규채용 기간)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에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 완료)
- (의무채용 시점) 연구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 ** (예시) 정부출연금 3년간 총액 10억원 과제로 2명을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스케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제 특성에 따라 부처에서 판단하여 조율 가능
-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지속할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 채용공고 게재, 면접 실시 여부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 고용 노력 확인
-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
-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직만 인정

○ 이행방안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에 '청년채용 의무화' 명시하고, 협약 시에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포함
-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채용확인서 또는 채용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고용여부 확인용, 고용 시 제출))를 기업이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이 어려운 경우는 근거자료(지속적인 채용 공고, 채용 면접 등) 확인 등을 통해 제외

-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 지속적인 채용 노력(채용 공고, 채용 면접 등)을 함에도 채용 지원자가 없어 신규 채용 및 대체 인력 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 시행기간 : 한시적 적용(~2025년)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 감면, 채용의무가 없는 과제도 기업이 청년 채용 시 현금부담 감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구분	부담 비율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15퍼센트 이상

○ 주요내용

- (대상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기업
 -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자
 - *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간)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제 특성에 따라 부처에서 판단
 -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현금부담 감액 인정기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1년에도 계속 고용 시 '21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이행방안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에 동 사항을 명시하고, 협약 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포함

※ 연구과제계획서에 동 과제 신규 채용인력을 의무채용 인력과 구분 기재

- (현금부담금 감면)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에 따라 현금부담금 납부를 감면하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 전년도 채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최종 감면여부 확정

※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채용확인서 또는 채용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고용여부 확인용, 고용 시 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고용유지 확인용, 고용 이후 연도부터 제출)

• (계속과제) 기업이 청년 채용 시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 감면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부담금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해당 시 개인연구지원팀에 별도 문의

7 공통 유의사항

□ 접수 관련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를 완료([제출]버튼 클릭)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수행 연구자 신분변동에 따른 조치 완화
 -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를 신청한 연구자가 접수마감일 이후 신분변동이 있어도 과제수행 허용

□ 연구자 연구윤리 의식 확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물론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 주요 연구수행 실적 작성 시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를 누락하거나, 2개 이상 동시 신청한 과제가 동시 선정되었음에도 과제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 포함

□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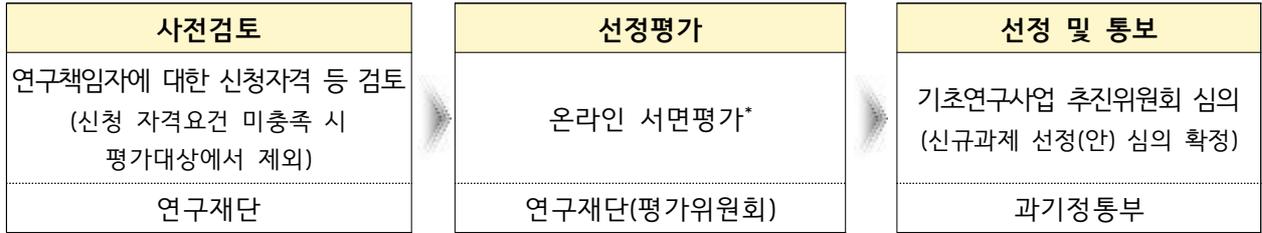
-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계상·집행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접수 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계상을 원하는 연구자에 한하여 IRIS 협약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득한 후 계상·집행 가능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IRIS 승인성 협약변경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및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1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중견연구(창의연구형)·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개척연구) 평가절차



- * 개척연구는 1차 사전 적격성 검토, 2차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중견연구(창의연구형) 및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는 온라인 서면평가로만 선정
-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평가절차



- * 국가아젠다 기초연구의 온라인 서면검토는 토론평가 대상 과제를 선별하기 위해 선행되는 절차로 기존 온라인 서면검토에 적용되는 평가위원 수 및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선정평가 방법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중견연구	창의연구형	온라인 서면	-
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온라인 서면	-
개척연구		토론(전문평가단)	온라인 서면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온라인 서면	토론

-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2 평가항목 및 내용

□ (중견연구(창의연구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온라인 서면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50점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20점
연구자의 우수성	20점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합계	100점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온라인 서면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융합분야의 경우 융합성도 포함	50점
연구주제의 심화 발전 가능성	20점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10점
연구자의 우수성	10점
연구 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합계	100점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개척연구) 평가항목 및 배점·가중치

평가항목	배점 및 가중치	
	(1차) 토론(전문평가단)	(2차) 온라인 서면
연구 아이디어의 대담성	100%	20점
변혁적 연구의 잠재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추진 전략의 체계성 및 우수성	-	80점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연구 성과(결과)의 영향력(파급력)		
합계	100%	100점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및 가중치	
	(1차) 온라인 서면	(2차) 토론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80점	20%
아젠다와의 부합성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적·산업적 파급력		
목표의 도전성 및 실현 가능성	20점	80%
추진 전략의 체계성 및 타당성		
연구자 역량의 우수성		
합계	100점	100%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3 차별성 검토

구 분	NTIS 차별성 검토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검토 내용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 시,) 전문가를 활용한 차별성 검토 실시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최초신규 접수된 연구계획서와 차별성 검토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검토 방법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한국연구재단 e-R&D시스템을 통해 유사과제 검토,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검토 기준	선정/후보권 과제와 최근 10년(당해연도 포함) 이내 NTIS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으로 최종 확정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 선정/후보권과 관계없이 실시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으로 최종 확정						
검토 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사업팀</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평가 실시 → 선정/후보권 과제 확정 학문단</td> </tr>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사업팀</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NTIS 차별성 및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사업팀</td> </tr> </table>	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사업팀	평가 실시 → 선정/후보권 과제 확정 학문단	사업팀	NTIS 차별성 및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사업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RB/전문가 2인을 통한) 차별성 검토 실시 학문단</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차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PM 협의체</td> </tr> </table>	(RB/전문가 2인을 통한) 차별성 검토 실시 학문단	(차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PM 협의체
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사업팀	평가 실시 → 선정/후보권 과제 확정 학문단							
사업팀	NTIS 차별성 및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사업팀							
(RB/전문가 2인을 통한) 차별성 검토 실시 학문단	(차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PM 협의체							

※ 차별성 검토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 과제는 차별성 검토 유사과제 대상에서 제외

N 연구비 지급 ·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 따라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직접비 + 간접비

※ **접수 시 직접비만 신청하며 간접비는 선정 시 한국연구재단이 별도 산정하여 지급**

○ 직접비

○ 간접비: 아래 간접비 산식을 적용하며 천원 미만 단위 절사

- 직접비 5,000만 원까지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일정비율(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0.5)을 적용하여 간접비 산출, 5,000만 원 초과분은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대로 산출

○ 직접비 5,000만원 이하 과제의 간접비 기준

= 직접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

○ 직접비 5,000만원 초과 과제의 간접비 기준

= (5,000만원×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50%)+(직접비의 5,000만원 초과분×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 지급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와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폐지

-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여 1차년도 연구기간 조정 없이 연차별 12개월분을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이동 시 연구비 지급 기준(연구개시일에 이동 포함)

- 주관연구기관 이동으로 간접비 고시비율이 변경되어도, 연차별 총연구비(직접비+간접비)는 당초 선정 시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

* 기존 기관(신규과제 신청·접수 당시 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선정금액 확정

□ **기업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별표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
 - 당초 선정 시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
 - * 신규과제 신청·접수 당시 기준에 따라 선정금액 확정(확정된 연구개발비 내 법령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조정)
 - ※ 2024년 이후 선정과제 및 2024년부터 주관연구기관을 기업으로 변경하는 계속과제에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 시행령 개정 시, 개정 법령에 따라 적용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과제 신청 시에는 직접비만 신청하므로, [별첨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계산기를 참고하여 신청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제2항
-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연구비 사용내역을 보고
- 각 단계(단계구분이 없는 경우 총연구기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 연구비 정산은 각 단계 종료(단계구분이 없는 경우 총 연구기간 종료) 시 실시

○ 연구비 유용, 직위해제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 금지

-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 시 연구비의 사용용도 위반행위로 보고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실시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V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최종평가: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에 대한 학문적·기술적 우수성 평가
 - 대상: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 ※ 개척연구는 후속지원을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최종평가 실시
 - ※ 최종평가 면제사업도 최종보고서는 제출 필수(최종평가만 면제)
 - 평가결과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연구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 발표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내용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

2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표^①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①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2025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구분		세부내용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퇴직	재임용 탈락 및 소속기관의 귀책사유(폐교, 파산 등)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 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이력 또는 계획이 기관제출용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출산·육아는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전임으로 신분변동이 된 경우에 한해 1단계 수행 후 조기종료 희망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은 이직 기관이 국내 기관인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
***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에 선정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 개척연구의 경우 연구실패에 따른 과제 중단 신청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제재처분 및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②
 - 기준 이외의 사유로 연구 수행 포기를 요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 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 ※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 수행 외 국가R&D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 불가
 - 연구 중에 연구자의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시(연구를 중단하고 사업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등 조치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p>②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p> <p>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p> <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대상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을 최종 결정한 사항</p>
--

3 성과관리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 내용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상에 수시로 입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 지식재산권 취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 요청 가능
-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VI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여부 검토
 - 단,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은 사업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총 연구기간(5년) 중 최대 1년까지만 국외파견 허용(계속과제 공통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 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에서 제공하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를 필수 이수

- ※ 인정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될 경우 재수강 필요
- ※ 참여연구자의 경우 권장사항에 해당
- ※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 1588-5834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https://public.irb.or.kr>) 활용(심의 및 면제 신청 문의처: 02-737-8312(의과학연구) / 02-454-9520(사회과학연구) / 02-778-9193(기타연구))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등에 대한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법령 위반 행위임.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성과가 있을 경우, 즉시 주관연구기관에 그 소유를 양도 조치
 - ※ 단, 주관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 연구과제의 명칭,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부처명)

6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7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포함)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에서 법령 및 안전정보 내용 확인(연구실 안전법·제도 문의처: 043-240-6469)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검증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증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

9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https://safe.koar.kr>)을 활용하기를 권고

10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검토 시 특수관계자의 학위 및 전공, 연구 실적 및 연구참여 경력, 연구 참여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승인 이후 각 항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요청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검증자료 및 결과 등을 기초하여 전문가 검토 실시
 -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 계속과제 동일 적용

11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체자원 분양상담 콜센터: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시기 바람.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학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함.
 - ※ 관련 법령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붙임 1. 개인기초연구사업 FAQ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FAQ 목 차

가. 공통사항 41-52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관련] 41

- ❶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❷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5.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❸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5.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3책 5공에서도 제외됩니까?
- 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❺ 교육부 소관 학문후속세대지원 및 학술연구혁신지원 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합니까?
- ❻ 학술·인문사회사업(개인연구군)을 수행 또는 신청 예정으로 개인기초연구 2차 신규과제 신청 가능합니까?
- 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❽ 1차 개인기초 신규과제 미 선정시, 이후 다른 신청 차수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타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신청요건 관련] 44

- ❶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❷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참여연구자(공동)) 포함이 가능합니까?
- ❸ 비전임 교원(연구원)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 ❹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❺ 인문사회 전임교원(연구원) 또는 비전임교원(연구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❻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전임교원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❼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❽ 외국기관 소속 내·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❹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 ❻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❹ 연구기간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 ❹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폐지에 따른 1차년도 연구기간이 궁금합니다.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 46

- ㉠ 연구과제의 차별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 ㉠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시, 최근 5년 이내 기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하여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학생연구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합니까?
- ㉠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 ㉠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비 계상 시 주의사항] 50

- ㉠ 간접비 분리지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 ㉠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까?
- ㉠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까?
- ㉠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까?
- ㉠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나. 중견연구(창의연구형) 53

- ㉠ 창의연구형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 당해연도 개인기초연구 1차 중견연구 유형2(글로벌형), 유형1, 도약형 신규과제 신청자일 경우, 개인기초연구 2차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합니까?

다.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53-55

- ㉠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청 시, 출산·육아 휴직기간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청 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 ㉢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청 시,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우수신진연구 자격요건에서 "만 39세 이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조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 ㉤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개시일(2025.9.1.) 전에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 ㉥ NRI 내 연구책임자 학력/경력 정보를 필수 입력해야 합니까?
- ㉦ 대학병원 소속인 경우 우수신진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 금번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에 신청하여 선정 시 2026년도 1차 우수신진연구 지원이 가능합니까?
- ㉨ 신진연구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청이 가능합니까?

라. 개척연구 56

- ㉠ 개척연구는 1인 1과제와 3책 5공 적용대상에서 제외입니까?
- ㉡ 개척연구는 1인 1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라면, 이번 개인연구 2차 공모 사업의 다른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까?
- ㉢ 개척연구에 선정된 후, 2026년 개인연구 1차 공모 과제에 신규 신청 가능한가요?
- ㉣ 개척연구는 1인 1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라면, 2025년 개인연구 1차 공모 과제 신규 선정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 ㉤ 현재 개인기초연구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추가로 개척연구 지원이 가능한가요?
- ㉥ 교육부의 6월 1일 개시인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청자의 경우 개척연구의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 ㉦ 개척연구의 1차 평가인 토론(전문평가단)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 영리·비영리 민간 연구소는 신청이 불가합니까?

마.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57-58

- ㉠ 국가아젠다 기초연구의 추진목적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 ㉡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사업의 특징과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 ㉢ 공모 대상으로 제시된 아젠다 별로 특정 학문 분야와 연구 주제만 신청가능합니까?
- ㉣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아젠다 별로 선정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 ㉤ 아젠다 목록에서 제시된 예시 외의 다른 연구 주제도 제안 가능한가요?
- ㉥ 영리·비영리 민간 연구소는 신청이 불가합니까?

가. 공통사항

<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 관련 >

Q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5.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글로벌 매칭형, 개척연구는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 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집단연구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Q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5.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A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하므로 현재 수행 중인 개인기초연구사업 과제가 있다면 2025년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2025. 12. 31. 내에 종료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수행 중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5. 12. 31.) 최종종료하는 경우,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3책 5공에서도 제외됩니까?

A 아닙니다.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 조건의 예외로만 인정되며, 3책 5공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책 5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만 제외됩니다.

Q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대 참여가능 과제 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합니다(3책 5공).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 및 기간을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구사업 외 수행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제를 지원하는 기관(또는 부서)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동일한 연구자라도 지원부처나 주관연구기관이 다르면, 각각 과제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부처나 주관연구기관에 관계 없이 연구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 '홍길동'이란 연구자가 '서울대학교(A부처 과제)' 및 '주식회사 대한민국(B부처 과제)'으로 과제를 수행 중일 때 지원부처나 주관연구기관에 관계 없이 '홍길동'을 기준으로 3책 5공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5년~과제 종료 시)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 개인기초연구 외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인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되는지 여부는 소관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요망

Q 교육부 소관 학문후속세대지원 및 학술연구혁신지원 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까?

A 교육부 소관 '25.6.1. 개시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 및 '25.9.1. 개시 학술연구혁신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지원했을 경우, 개인기초연구사업 2차에 동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개척연구에 한하여 '25.6.1. 개시 사업 신청자 신청 가능**

• 동시 신청제한 적용 대상 사업 범위

구 분		세부 사업	
교육부 소관	'25.6.1. 개시	학문후속세대지원	Post-Doc. 성장형 연구지원
	'25.9.1. 개시	학술연구혁신지원	보호연구, 미래도전연구지원, 글로벌R&D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 Post-Doc. 성장형 연구지원

Q 학술·인문사회사업(개인연구군)을 수행 또는 신청 예정으로 개인기초연구 2차 신규과제 신청 가능합니다까?

A 학술·인문사회사업(개인연구군) 사업은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술·인문사회사업(개인연구군) 사업 2책 3공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3책 5공(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참여자격(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과 무관하게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하며, 사후 적발 시 신청 또는 선정취소 처리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제한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에서 조회가능합니다.

Q 1차 개인기초 신규과제 미 선정 시, 이후 다른 신청 차수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타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까?

A 사업성격 및 연구비 규모가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Ⅲ-3. 차별성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관련 >

Q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A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참여연구자 (일반)	- 교원(전임·비전임), 학·석·박사급 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등 -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증빙)
학생연구자	-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 휴학생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보다 높은 직급의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은 '단독연구'로만 신청가능하며, 연구책임자 1인 + 참여연구자(일반) 다수로 구성 가능

Q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참여연구자(공동)) 포함이 가능합니까?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 2025년부터 공동연구 연구형태가 폐지되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연구자(공동)(구. 공동연구원)을 포함할 수 없으며, 단독연구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비전임 교원(연구원)도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비전임 교원(연구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중견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 중에는 주관연구기관과 근로계약(연구참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는 비전임 교원(연구원) 신청 불가

Q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매년 실시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
 - ② 신청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③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포함
 -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 국·공립대 기금교수: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 ②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 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③ 학교교육·지도,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 ④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Q 인문사회 전임교원(연구원) 또는 비전임교원(연구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전임교원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국·공립대학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한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 교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외국인 연구자가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근로계약(연구참여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외국기관 소속 내·외국인도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내·외국인 연구자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참여연구자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내기관의 외국소재 분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도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Q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사업에 한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 복무자가 신청할 수 있음

Q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신청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대상이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구개시일(2025.9.1.) 기준 소속 예정기관이 있을 시, 소속 예정기관과 고용계약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신청가능 여부 확인 필요

Q 연구기간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A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구기간 고정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선택		
사업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중견연구 (창의연구형)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기간	1년	1~3년		

Q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폐지에 따른 1차년도 연구기간이 궁금합니다.

A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여 2차 신규과제의 1차년도는 연구기간 조정 없이 12개월('25.9.1. ~ '26.8.31.) 지원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류/접수방법 관련 사항 >

Q 연구과제의 차별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차별성 검토의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Ⅲ-3. 차별성 검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A 국문요약문을 제외한 연구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Q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분량 초과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줄 간격, 자간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서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Q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시, 최근 5년 이내 기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하여 제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대표적 연구실적은 최근 5년인 2020. 1. 1. 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나, 성별에 관계 없이 연구자 본인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2020. 1. 1. 이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2020. 1. 1. 전으로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0. 1. 1.이후에 해당하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2020. 1. 1. 이후가 아닌 2019. 1. 1. 이후 실적부터 제출이 가능하며,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서식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빙서류가 없거나 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표적 연구실적 작성 서식의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는 학생연구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합니까?**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도 작성 필요).

ⓐ **각 접수기간(연구자 접수·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제출 전·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숨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및 기본폰트 외 유료·번들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이 2GB(각 첨부파일별 용량은 5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 (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② 또한 접수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의·치·한의대 소속 연구자로서 의약학 분야 과제 신청 시,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에 본인의 소속 "교실"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속교실 정보가 없는 경우, IRIS 과제신청화면 중 연구원 연차별 참여기간 메뉴에서 전공명을 필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전공(교실) 정보는 과제의 심사평가위원 섭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Q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은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정보 전환 → ③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진행하는 연구자번호 발급·조회·수정 서비스는 2021.8.22.부로 종료

※ 국가연구자번호가 발급되어 있더라도 연구자 전환 동의 필수(연구자 전환 동의를 하지 않은 연구자는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접속 후 연구자 전환 동의 팝업창 내 동의 요망)

Q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 시스템(NRI)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 전환 동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가 필수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IRIS 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책임자의 NRI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대학'으로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과제신청을 진행·완료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괄담당자는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에 기관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수마감 기간이 임박하여 기관정보를 '대학'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 동일인을 다수 기관의 대표자 또는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하려면, 소속기관을 다수로 등록하신 후 기관 및 소속정보를 일치시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예: 홍길동의 소속기관을 A대학 및 A대학산학협력단으로 등록한 후, A대학 대표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A대학 홍길동을, A대학산학협력단 대표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A대학산학협력단 홍길동을 선택). 만약 A대학으로 과제신청을 하는 시점에 A대학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탭에서 A대학산학협력단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를 A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IRIS 소속기관 정보가 'A대학'이 아닌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인력은 'A대학 산학협력단'의 기관담당자 권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대학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는 'A대학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A대학'의 과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A대학' 기관담당자도 'A대학' 뿐만 아니라 'A대학 산학협력단' 과제까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IRIS R&D 업무포털 > R&D 고객센터 > 기본정보 내 협약대표기관 정보가 승인하고자 하는 기관정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기초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므로,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알람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행정지원 업무는 제외)에 대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아울러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 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구비 계상 시 주의사항 >

Ⓚ **간접비 분리지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 2021년부터 개인기초연구사업 공모 시 직·간접비를 분리하여 공고하여 각 연구과제별 유사한 수준의 직접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과제 접수 시에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선정 이후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간접비 계상 방법에 대한 내용은 [IV-1.연구비 지급]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URL: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Q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까?

A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Q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까?

A 영리기관인 경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Q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까?

A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과제의 지급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의 합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Q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총인건비(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의 인건비를 기재 • 연구책임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학생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과정생만 기재(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포함) ※ 휴학생은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주관연구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 2023년 3월부터 과정별 각 금액 이상으로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과정 월 130만원, 석사과정 월 220만원, 박사과정 월 300만원
연구시설·장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의 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 불가 • 해당 연구과제 최종 종료 2개월 이전 구입 및 검수를 완료하여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초연구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집행가능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단계로 구분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연도 협약용계획서(연구수행 기간 모든 연차 기준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연구종료 시까지 연차별 증액 불가 • 실제 인건비 사용 금액이 연구계획서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연구수당 또한 실 사용 금액의 20%까지만 지급 가능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일반적인 국외출장비 등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임.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접수 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계상을 원하는 연구자에 한하여 IRIS 협약변경신청을 통한 승인*을 득한 후 계상·집행 가능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IRIS 승인성 협약변경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및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위탁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초연구는 원칙적으로 계상·집행 불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조

※ IRIS 신청용/협약용 계획서상 비목별 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실안전관리비 및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별도 입력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은 주관연구기관이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나. 중견연구(창의연구형)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창의연구형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A 중견연구(창의연구형)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은 중견연구의 연구책임자 자격요건과 동일하며 아래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

※ 연구진 구성 등 관련 세부내용은 Q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FAQ 참고

Q 당해연도 개인기초연구 1차 중견연구 유형2(글로벌형), 유형1, 도약형 신규과제 신청자일 경우, 개인기초연구 2차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합니까?

A 상반기(1차) 중견연구 유형2(글로벌형), 유형1, 도약형 신청자 중 선정자에 한하여 2차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청 시, 출산·육아 휴직기간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출산·육아 휴직기간은 박사학위 취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협약서를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신청자격을 인정합니다.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 18시까지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신자: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장).

* 당시 소속기관 내부 승인공문을 바탕으로 출산·육아 휴직기간을 확인한 후 협약서 작성(협약서 서식은 신청서식 내에 있는 '출산·육아 휴직기간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제외 협약서' 활용)

※ 관련 증빙서류는 연구재단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관연구기관이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공문(협약서 포함)만 제출

Q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청 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2020. 1. 1. 이후 임용)의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 외 신청자격도 충족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은 '최초 조교수 이상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㉑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청 시,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5년 기준) 2020. 1. 1. 이후에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국내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임강사 경력) 고등교육법 개정(2011.7.21.)으로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로 인정하며, 해당 경력도 함께 인정합니다.

Ⓐ (퇴직·휴직기간) 퇴직, 휴직기간은 '5년 이내' 기준에 포함되며, 출산·육아 휴직에 의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임용대학 기준-전문대학 임용 후 4년제 대학으로 새로 임용) 최초 대학교원의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문대학 임용일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임용대학 기준-외국대학) 외국대학의 교수경력도 신청요건의 교원 임용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대학에 재직하다가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에는 국내대학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확약서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 18시까지 확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수신자: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최초 기관 및 최초 임용일을 확인한 후 확약서 작성(확약서 서식은 우수신진연구 신청서식 내에 있는 '전임교원(조교수 이상) 최초 임용 5년 이내 확약서' 활용)

※ 관련 증빙서류는 연구재단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관연구기관이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공문(확약서 포함)만 제출

㉒ **우수신진연구 자격요건에서 "만 39세 이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조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 박사학위 취득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연구개시일(2025. 9. 1.) 전에 박사학위 취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상의 학위 정보(학위 취득기관/취득연도 등)를 연구개시일(2025. 9. 1.)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9세 초과인 자 중 연구개시일(2025. 9. 1.)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

- Q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구개시일(2025.9.1.) 전에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 A** 아직 주관연구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시일(2025. 9. 1.) 전에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구개시일(2025. 9. 1.) 기준 소속 예정기관과 고용계약을 사전에 협의하여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NRI 내 연구책임자 학력/경력 정보를 필수 입력해야 합니까?**
- A** NRI 내 입력한 연구책임자 학력/경력 정보가 사전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전검토 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대학병원 소속인 경우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A** 대학병원 소속 정규직 연구자이며 병원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단,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충족 필요
- Q 금번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에 신청하여 선정 시 2026년도 1차 우수신진연구 지원이 가능합니까?**
- A**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2026. 12. 31.내로 최종종료되는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수행 시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 1인 1과제 수행 제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등 충족 시 2026년도 1차 우수신진연구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2026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공고 시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신진연구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청이 가능합니까?**
- A** 수혜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25년도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진연구(우수신진연구)를 기 수행한 연구자도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개척연구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개척연구는 1인 1과제와 3책 5공 적용대상에서 제외입니까?

A 1인 1과제는 적용대상 제외이지만, 3책 5공에는 포함됩니다.

Q 개척연구는 1인 1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라면, 이번 개인연구 2차 공모 사업의 다른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초연구사업 2차 신규 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척연구에 선정된 후, 2026년 개인연구 1차 공모 과제에 신규 신청 가능합니까?

A 1인 1과제와 3책 5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척연구는 1인 1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라면, 2025년 개인연구 1차 공모 과제 신규 선정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A 3책 5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현재 개인기초연구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추가로 개척연구 지원이 가능합니까?

A 3책 5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교육부의 6월 1일 개시인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신청자의 경우 개척연구의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A 개척연구는 1인 1과제에서 예외를 적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9월 1일 개시인 교육부 사업의 경우 동일 시기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개척연구의 1차 평가인 토론(전문평가단)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A 전문평가단에 의하여 연구계획서의 1번(연구 아이디어의 대담성) ~ 3번(사업 목적(개척연구)과의 부합성)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Q 영리·비영리 민간 연구소는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A 개척연구는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 대상은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제한됩니다.

마.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 공통사항 FAQ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국가아젠다 기초연구의 추진 목적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A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로 주요 국가들은 기초연구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에 책임을 다하고자 국가 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국가아젠다기초연구'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경제·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사업의 특징과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A 국가아젠다기초연구는 정책적 필요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Top-down)하면서도, 연구자가 그 틀 안에서 연구계획(연구방법, 수행방식 등)을 자유롭게 제안(Bottom-up)할 수 있는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RFP를 제시하는 원천기술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입니다.

연구자들은 제시된 아젠다에 부합하는 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40개의 아젠다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①혁신전략형(프런티어형) 30개와 ②미래유망형(파이오니어형) 10개로 구성됩니다. 혁신전략형(프런티어형)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세부중점기술 중 지원 공백 분야, 국내 연구 저변 등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되었고, 미래유망형(파이오니어형)은 신흥기초원천기술 분야 중 태동기 유망 분야, 국책 연구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발굴되었습니다.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기초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Q 공모 대상으로 제시된 아젠다 별로 특정 학문 분야와 연구 주제만 신청가능합니까?

A 아닙니다. 아젠다와의 부합성만 있으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창의적인 연구 주제가 신청 가능하며, 아젠다 별로 기초연구본부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의 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별첨3. 2025년도 국가아젠다 목록’에서 본인 연구 주제와의 부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젠다를 선택하신 후, 세부 연구 내용을 감안하여 RB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아젠다 별로 선정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A 아젠다 별 선정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는 각 아젠다 별로 1차 온라인 서면 평가와 2차 토론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평가는 사업목적과 아젠다와의 부합성, 연구주제의 적합성 및 파급력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평가는 목표의 도전성·실현가능성, 추진 전략의 체계성·타당성, 연구자 역량의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80~20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학문분야 중심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한 아젠다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Q 아젠다 목록에서 제시된 예시 외의 다른 연구 주제도 제안 가능한가요?

A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는 지원가능한 아젠다를 지정하지만, 연구 내용을 아젠다 정의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는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공모안내와 함께 공지된 ‘별첨3. 2025년도 국가아젠다 목록’의 아젠다를 주제로 자유롭게 연구자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시 ‘아젠다와의 부합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므로 공지된 아젠다와 관련된 연구주제가 되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영리·비영리 민간 연구소는 신청이 불가합니까?

A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신청 대상은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제한됩니다.

붙임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등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 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 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p>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p> <p>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p> <p>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p> <p>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p> <p>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p> <p>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p> <p>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p> <p>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p> <p>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p> <p>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p> <p>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p> <p>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p>
나. 연구지원비	<p>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p> <p>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p> <p>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p> <p>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p> <p>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p> <p>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p> <p>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p> <p>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p>

	<p>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p> <p>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p> <p>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p>
<p>다. 성과활용 지원비</p>	<p>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p> <p>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p> <p>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붙임3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시행 2025. 3. 6.]

※ 향후 간접비고시비율 고시 내용에 따라 적용 예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7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2.55
	한국기계연구원	13.1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9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5
	한국식품연구원	23.1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4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03
	한국원자력연구원	22.89
	한국재료연구원	10.30
	한국전기연구원	14.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3.78
	한국천문연구원	19.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0
	한국한의학연구원	22.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9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6.02
	한국화학연구원	20.09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녹색기술연구소	16.3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26
	극지연구소	8.0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93
	세계김치연구소	17.77
	안전성평가연구소	17.34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2개)	광주과학기술원	26.49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4
	울산과학기술원	25.6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18
	한국과학기술원	23.50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99
	한국세라믹기술원	20.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19
	한국원자력의학원	27.0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7.2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고등과학원	19.7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1.67
	나노융합기술원	16.39
	한국뇌연구원	29.70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11
	한국광기술원	20.3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0.7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1.88
	한국소재융합연구원	25.85
	한국자동차연구원	18.30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4.1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2.13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가천대학교	26.38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92
가톨릭관동대학교	22.94	국민대학교	20.04
가톨릭대학교	25.5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7.43
강남대학교	14.54	극동대학교	5.19
강릉원주대학교	22.86	금오공과대학교	25.28
강원대학교	23.25	나사렛대학교	16.33
건국대학교	30.14	남부대학교	24.13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건양대학교	28.33	남서울대학교	30.1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5.52	단국대학교	23.90
경기대학교	21.06	대구가톨릭대학교	28.41
경남대학교	26.68	대구대학교	24.46
경북대학교	26.55	대구한의대학교	25.24
경상국립대학교	22.40	대전대학교	23.15
경성대학교	20.14	대진대학교	30.13
경운대학교	10.48	덕성여자대학교	29.96
경인교육대학교	13.15	동국대학교	25.61
경일대학교	20.99	동덕여자대학교	22.65
경희대학교	23.78	동명대학교	25.46
계명대학교	23.64	동서대학교	23.10
고려대학교	23.98	동신대학교	21.27
고신대학교	29.09	동아대학교	26.09
공주대학교	24.92	동양대학교	11.76
광운대학교	26.72	동양미래대학교	5.19
광주대학교	20.31	동의대학교	21.76
광주여자대학교	5.19	명지대학교	29.34
국립군산대학교	20.58	명지전문대학	5.19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12.98	목원대학교	28.7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8.70	목포대학교	15.25
목포해양대학교	18.30	연세대학교	26.96
배재대학교	27.68	영남대학교	24.38
백석대학교	28.21	영산대학교	15.51
부경대학교	23.02	용인대학교	12.62
부산가톨릭대학교	24.17	우석대학교	28.13
부산대학교	20.65	우송대학교	28.42
부산외국어대학교	29.09	울산과학대학교	7.28
부천대학교	15.32	울산대학교	21.53
북한대학원대학교	5.19	원광대학교	25.91
삼육대학교	32.10	위덕대학교	16.39
상명대학교	27.63	육군사관학교	9.98
상지대학교	29.09	을지대학교	21.19
서강대학교	29.87	이화여자대학교	27.54
서경대학교	21.93	인덕대학교	18.3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7.86	인제대학교	22.20
서울교육대학교	11.88	인천대학교	26.30
서울대학교	24.69	인하공업전문대학	19.9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25.54	인하대학교	27.40
서울시립대학교	26.77	전남대학교	22.50
서울여자대학교	20.11	전북대학교	19.84
서원대학교	27.23	전주대학교	27.00
서일대학교	14.03	제주국제대학교	21.42
선문대학교	27.62	제주대학교	24.89
성결대학교	5.19	제주한라대학교	5.19
성공회대학교	9.54	조선대학교	26.93
성균관대학교	22.93	중부대학교	21.27
성신여자대학교	29.96	중앙대학교	23.34
세명대학교	20.72	중원대학교	31.24
세종대학교	25.11	차의과학대학교	29.74
수원대학교	22.30	창신대학교	18.21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숙명여자대학교	24.69	창원대학교	23.84
순천대학교	19.42	청운대학교	20.32
순천향대학교	21.42	청주대학교	12.59
송실대학교	26.22	춘천교육대학교	14.22
신라대학교	27.84	충남대학교	22.56
아주대학교	25.99	충북대학교	22.04
안동대학교	19.36	평택대학교	5.19
안양대학교	23.80	포항공과대학교	23.19
한경국립대학교	24.78	한동대학교	24.54
한국공학대학교	20.98	한라대학교	20.32
한국교원대학교	18.16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8.2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32	한림대학교	18.30
한국농수산대학교	17.69	한밭대학교	26.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19	한서대학교	29.8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60	한성대학교	25.53
한국예술종합학교	15.16	한신대학교	10.63
한국외국어대학교	29.34	한양대학교	26.1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2.20	한양여자대학교	13.9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3.81	협성대학교	19.47
한국체육대학교	20.50	호남대학교	21.92
한국항공대학교	29.96	호서대학교	28.69
한남대학교	23.91	홍익대학교	5.19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40
	삼성서울병원	22.03
	키엘연구원	18.56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7.10
	한국나노기술원	17.55
	한국선급	24.52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6.80

붙임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책임)전문위원(CRB/RB)분야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자연과학	수학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해석학
		위상수학/기하학
		응용수학
		확률/이론통계
		응용통계
	물리학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핵물리/플라즈마
		통계물리/생물물리/복합물리
		광학/원자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지구과학	지구/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화학생물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재료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생명과학	기초생명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명정보학
		생화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분자생명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면역학		
감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암생물학		
기반생명	식량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생물공학	
의약학	기초의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학
		약리학
		재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응용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생식발달의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외과/응급 중환자 및 수술기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건강증진의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치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두개안면 형태/병리/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한의학	기초한의학
		응용한의학
	약학	기초생명약학
		응용생명약학
		약품화학 및 천연물
		물리약학 및 약제학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공학	기계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재료가공		
건설/교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설비환경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측량
		토목구조/시공/재료공학
		건축시공재료
		건축구조
소재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소재
화공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학문단	CRB(Chief of Review Board) 분야	RB(Review Board) 분야
ICT·융합연구	전기/전자	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전기/전자 기반 융합
	통신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기반 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의료기기
		바이오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바이오소재
		뇌인지과학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차세대에너지 융합
		환경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공학
		교차및초학제융합
생활과학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시스템 관련 문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가입·이용 관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 1877-2041
 -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사업 관련 문의처: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개인연구: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공통번호) 6392, 6393, 6394, 6397

중견연구 (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 (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6805	6803	6814	6808

□ 평가 관련 문의처: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중견연구(창의연구형)	6559	6537	6055	6543	6565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6553	6533	6053	6542	6564
개척연구	6554, 6552	6538	6054	6543	6568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6557	6533	6059	6545	6565